



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중요 공지

국제 우편물에 대하여
수입금지품 및 불합격품은 식물방역법에 따라
사전 통보 없이 폐기됩니다.



국제 우편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하여
검사결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것은
식물방역법에 따라 발송인, 수취인에게 사전 통보
없이 즉시 폐기됩니다.

1 수입금지품

- (1) 일본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식물 (뒷면 참조)
- (2) 흙 또는 흙이 부착된 식물
- (3) 검역 대상이 되는 병해충

2 불합격품

- (1)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(Phytosanitary certificate) 첨부가 없는 식물(뒷면 참조)
- (2) 검역 대상이 되는 병해충이 부착된 식물



불법으로 수입금지물품이나 식물을 반입한 경우에는
식물방역법에 따라 폐기 처분되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
300만엔 이하(법인의 경우는 5,000만엔 이하)의 벌금이
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식물의 병해충 침입 경계 중

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



일본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주요 식물

- 지중해과실파리나 귤과실파리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 온 대부분의 과실·과채류(망고 및 감귤류 등)
- 코드린나방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 온 껍질 있는 호두 등
- 그 외에 일본 미발생이며, 세계적으로 피해가 큰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으로부터는 많은 식물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식물 방역소에 문의하십시오.



망고



감귤류



구아바



고추



껍질 있는 호두



검사 증명서가 필요한 식물

- 과실, 채소, 곡물 등 외에 절화, 종자, 묘목, 식물을 원재료로 한 가공품의 일부도 포함됩니다.
- 곡물류(쌀, 조, 옥수수, 메밀, 보리류 등) 콩류(대두, 팥, 땅콩 등), 목재, 카카오 콩, 참깨, 타마린드 건과, 고수, 일부 드라이플라워, 한약, 향신료 등은 건조한 것이라도 검사증명서 첨부이 필요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식물 방역소에 문의하십시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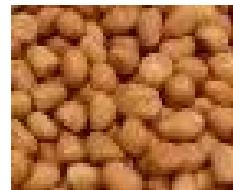
쌀



조



대두



땅콩



타마린드 건과

식물방역소 주요 문의처

- 요코하마 식물방역소 045-211-7153
- 모지 식물방역소 093-321-2601
- 나고야 식물방역소 052-651-0132
- 나하 식물방역사무소 098-868-2850
- 고베 식물방역소 078-331-2376

식물방역소 홈페이지는 여기

